

V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1. 사업 개요
2. 서비스 대상자 선정
3. 이용권(국민행복카드) 지급 및 이용
4. 서비스 실시
5. 예산 집행 및 정산
6. 비용의 지불 정산
7. 개인정보 관리

V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1 사업 개요

가. 추진배경

- 청소년산모 특성상 사회적 노출 기피, 부모와의 관계단절 등으로 산전관리가 미흡한 실정

나. 목적

-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산모 대상으로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

다. 추진경과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 도입 확정('10.12.)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 지침 마련·통보('11.1.)
 - － (지원대상 및 방식) 미혼모자시설에 입소한 만 18세 이하 청소년산모, 직접청구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전용카드 도입 추진('11.9~12.)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방식 개선('12.1.)
 - － (지원대상) 미혼모자시설에 입소한 만 18세 이하 청소년산모
→ 만 18세 이하 모든 청소년산모
 - － (지원방식) 직접청구 → 전용카드(보건소에서 발급되는 개인 지정형 정부기관 법인체크카드)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국민행복카드 도입('15.5.)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지원범위 및 사용기간 확대('19.1.)
 - (지원범위) 임신부의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중 본인부담 의료비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유아의 요양기관 진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용 중 본인부담비용 추가
 - (사용기간)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범위에 임신부의 약국 사용 추가('20.7.)
 - (지원범위) 임신부의 임신·출산과 관련한 의료비 외에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용 중 본인부담비용에 대해서도 지원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21.1.)
 - (지원대상) 만 18세 이하 → 만 19세 이하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항목 및 지원기간 확대('22.1)
 - (지원항목) 임신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지원기간)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라. 서비스 개요

- 지원대상자
 - 만 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 * 연령은 “임신헌인서”상 ‘임신헌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 이며, 소득·재산 기준 없음
 - * (연령 산정 예시) '05.2.10. 출생한 김산모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한 임신헌인일은 언제까지 인가요? <25.2.9.>
- 지원범위
 - 임신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 불가

- 지원금액
 - 임신 1회 당 120만원 범위 내
- 사용기간
 - 카드 수령 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유산진단일, 출산 이후 서비스 신청한 경우 출산일) 이후 2년까지
 - * 예 분만예정일이 2025.5.1.인 경우 2027.4.30.까지 사용 가능
- 지원방법
 -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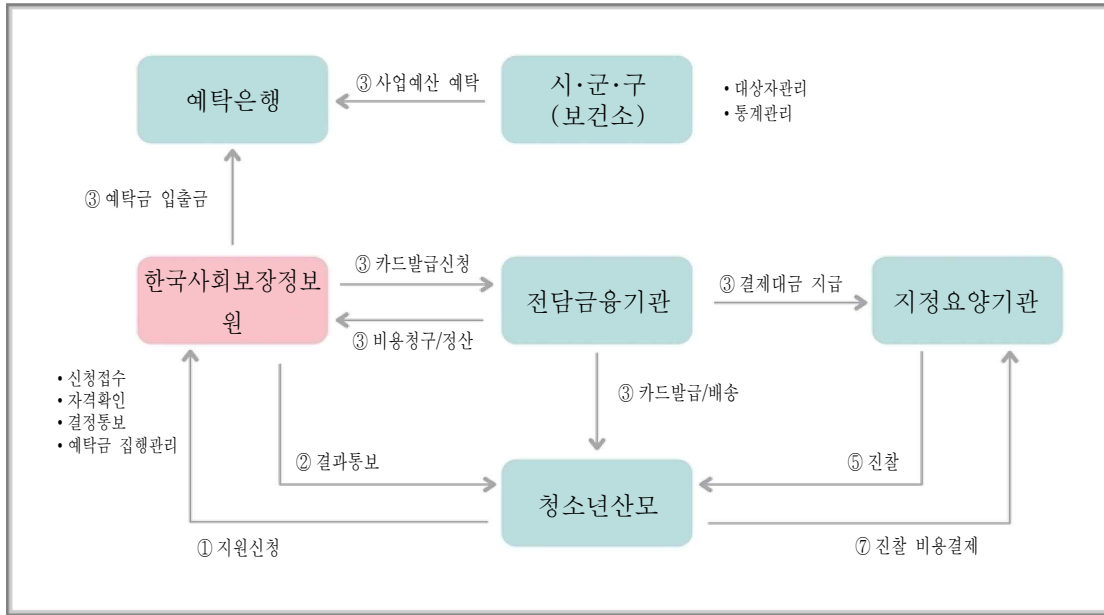
마. 서비스 운영방식

- 관련근거
 -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 제10조(신청에 따른 조사), 제11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및 제28조(사회서비스 전자이용권의 관리체계 구축)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업무의 위탁), 제8조의3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국민행복카드 통합카드 운영관리 사업 계약 제2조 및 제3조
- 운영방식
 - 국가바우처 운영관리시스템 활용(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운영 위탁)
 - (위탁 기관 및 업무) 바우처사업 운영 전담기구인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의 신청접수 및 자격결정
 - 이용권 사용금액에 대한 비용처리 및 정산
 - 예탁금 관리 등

- (카드발급) 국가바우처 운영관리사업 계약에 따른 전담카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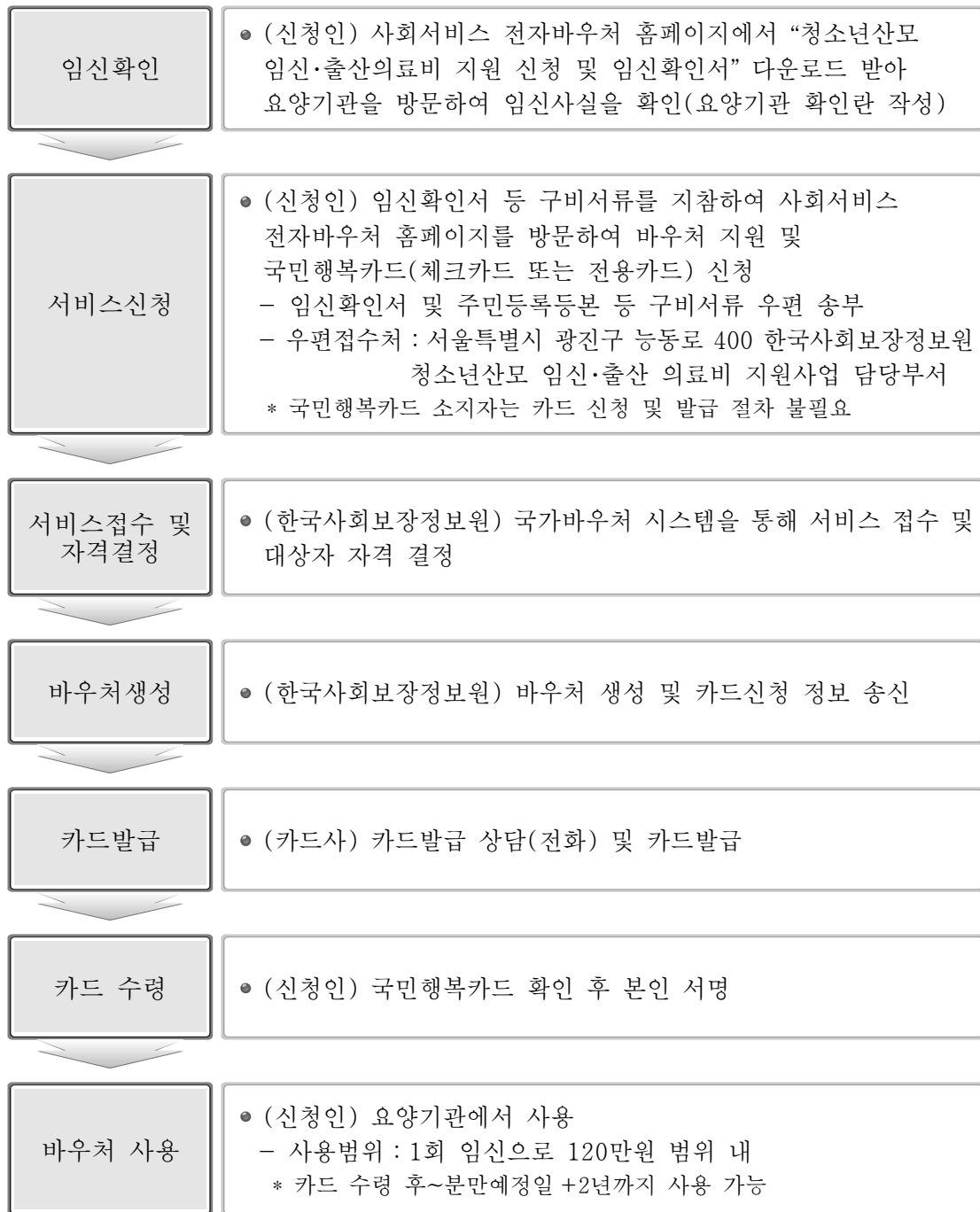
- BC카드의 회원카드사, 롯데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 운용절차



바. 바우처 신청 및 이용절차

제V장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신출산 진료비 사업’ 신청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신청정보와 주민등록 주소지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신청 및 구비서류 제출 절차 생략

사. 기관별 담당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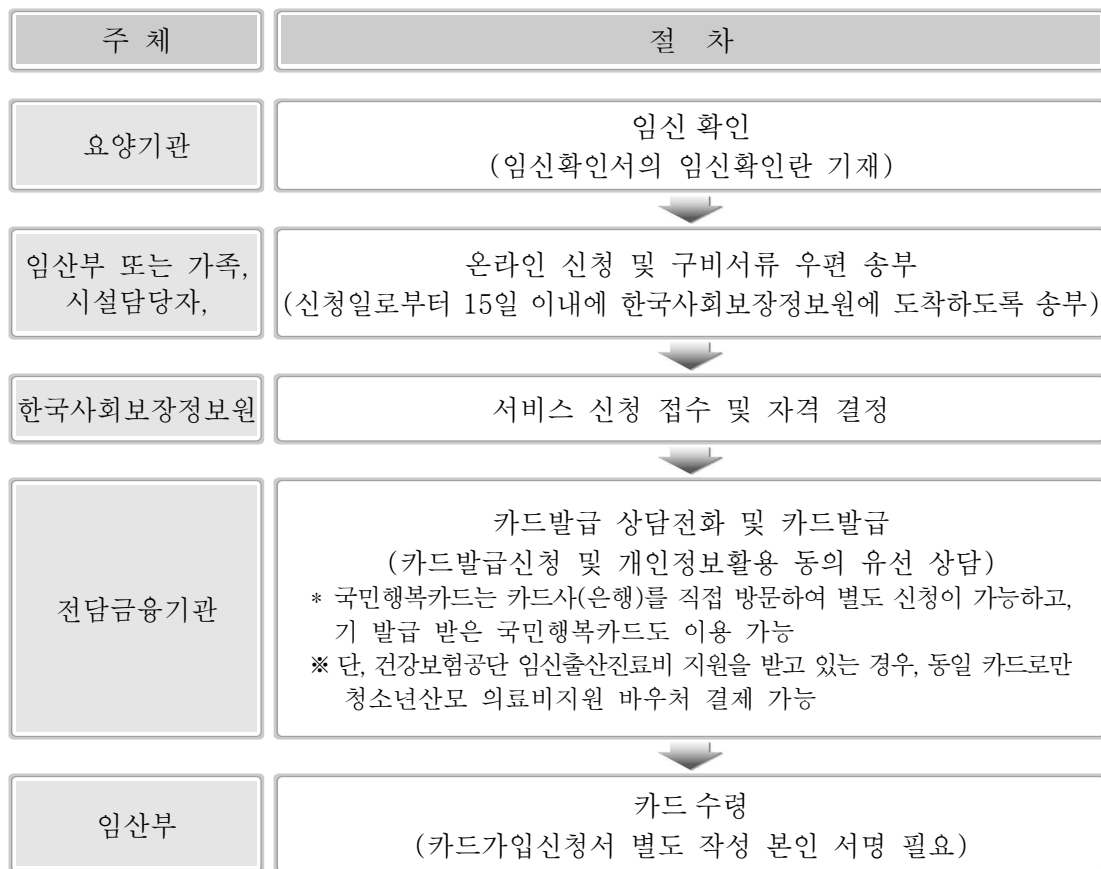
구 분	업무 내용
보건복지부	● 기본계획 수립 ● 사업평가 및 지도·감독 ● 사업 홍보 및 교육
보 건 소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접수 및 지원 대상자 관리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예탁 및 통계 보고
요양기관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대상자 관리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청구 및 수령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접수 및 자격결정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바우처 생성 및 관리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예탁금 운영 및 관리 ● 국가바우처 운영관리시스템 운영
전담금융기관 (카드사)	● 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거래내역 관리 ●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정산
예탁은행	● 사업비 예탁계좌 관리 ● 예탁금 입/출금 관리

2 서비스 대상자 선정

가. 신청기준

- 임신부 본인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 임신부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고위험임신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족이 대리 신청 가능
 - ※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나. 신청절차



- ※ 신청한 카드사에서 대상자 본인 확인을 위한 발급상담 전화가 발신됨. 다만, 전화연결이 지연되는 경우 카드 발급이 지연됨.
- ※ 전담금융기관에서 청소년 임산부에게 카드발급 상담전화 시 본인여부, 카드수령지 등 확인
- ※ 임산부는 카드수령 시 카드 가입신청서 별도 작성 및 임산부 본인 서명 필요

● 신청권자 : 임신부 본인 또는 그 가족

- 임신부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고위험 임신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위임장을 가지고 대리 신청 가능
- 가족의 범위 :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서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신청 접수처

- 온라인신청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 구비서류 접수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산모 업무 담당
- ※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17층)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산모 바우처 사업 담당자 (우편번호) 04933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신출산 진료비 사업' 신청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신청정보와 주민등록 주소지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신청 및 구비서류 제출 절차 생략

● 제출서류

- 청소년산모 본인이 신청한 경우
 -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서식 제1호)' 1부(이하 '임신확인서'라 한다.)
 - 임신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 ※ 주민등록등본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하여야 인정되므로, 가능한 최근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제출
 - ※ 신청서상의 임신확인란을 요양기관에서 확인 받은 후 신청
 - ※ 의료비 지원대상자가 만14세 미만인 경우에는 '임신확인서' 뒷면의 맨 하단에 있는 '법정대리안란'에 반드시 동의 서명 후 제출

※ 청소년산모가 본인 또는 가족 휴대폰인증 문제로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여 미혼모자 시설, 권역별 미혼모·부자지원기관, 가까운 보건소에 신청 할 경우 해당 기관에서는 본인 확인 후 제출서류를 받아서 공문으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신속하게 우편 송부

* 제출서류 :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학생증, 청소년증, 주민등록증 등) 사본

* 청소년산모가 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 산모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에서 온라인 접수는 하지 않음(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등록함)

제V장

－ 청소년산모 가족이 대리 신청한 경우

-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확인서(서식 제1호)’ 1부
- 임신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 위임장(서식 제3호), 대리인 신분증 사본, 청소년산모(임산부)와의 가족관계를 입증(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할 수 있는 서류

※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영유아와 법정대리인 및 영유아와 임신부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각각의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제출기한

－ 온라인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도착하도록 송부

※ 제출기한 내에 제출서류(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를 미제출한(미비한 경우 포함) 사람에게는 신청 또는 서류도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도록 안내

다. 결 정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담당자는 신청 이후 구비서류 내용을 확인하여 접수 처리 및 대상자 자격 결정

※ 전담금융기관의 카드발급 상담전화를 위해 전화번호 기재 필수(휴대전화번호는 본인 확인에 반드시 필요하므로 기재)

※ 요양기관기호, 면허번호 반드시 기재,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에 대한 본인서명 확인

- 대상자 선정 결과는 국가바우처 운영관리시스템을 통해 전담금융기관(카드사)으로 전송

라. 통지, 발급 및 카드수령

- 전담금융기관(카드사)에서 본인확인(카드발급 상담전화 실시) 후 카드 발급 및 서비스 이용 방법 등 안내

－ 이용권 지원액, 서비스 이용 절차 및 서비스 범위 등 안내

- 전담금융기관은 대상자에게 카드를 개별로 송부하고, 서비스이용 방법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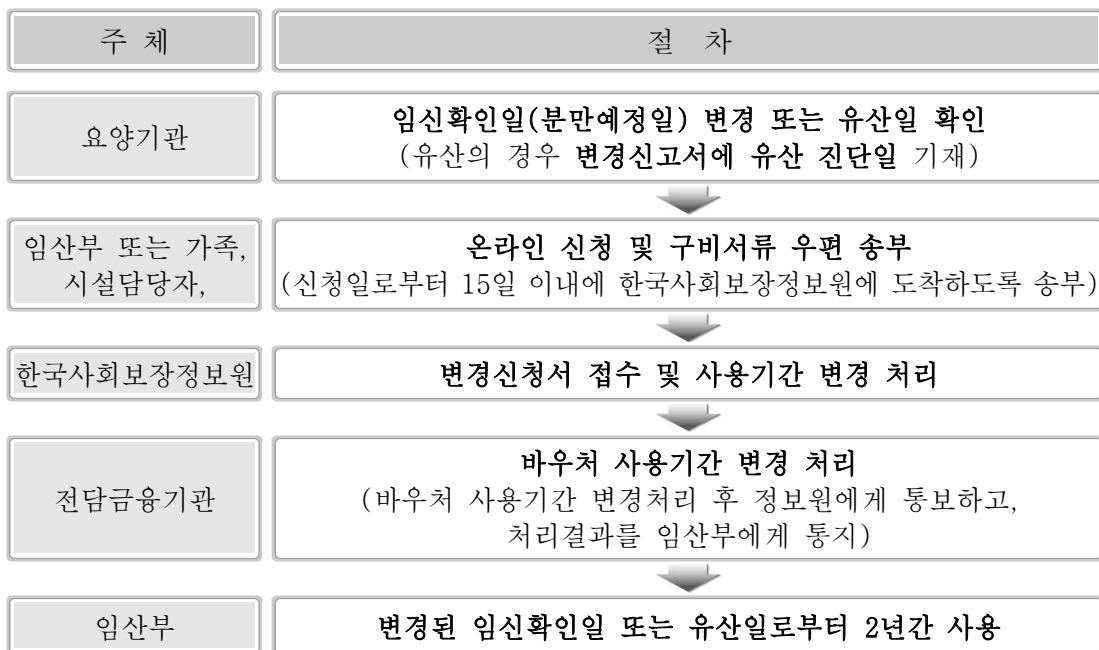
－ 자격결정 완료일로부터 7~10일 이내에 카드발급 및 배송

- 전담금융기관의 카드발급 상담 전화 확인 때 본인이 요청한 카드수령 주소지로 배송
 - 임산부는 카드수령 시 카드가입신청서를 별도 작성하며, 본인서명날인 후 카드수령 가능(원칙적으로 본인이 국민행복카드 수령)
 - 신분증(학생증, 청소년증, 주민등록증 등) 또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 증명서 등) 제시
 - ※ 전담금융기관 영업점을 방문하여 카드 수령 가능

마. 변경

- 임신확인일, 분만예정일 변경 및 바우처 사용 중 유산 진단 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변경 신고서(서식 제2호)'를 작성하여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제출
 - ※ 변경사항 신고 시에는 요양기관 확인란(임신확인서)을 요양기관에서 먼저 확인 받은 후 신청 가능
 - ※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전담금융기관(카드사)을 통해 변경 신청 가능

● 변경신청 절차



3

이용권(국민행복카드) 지급 및 이용

가. 개 요

- 서비스 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는 이용권(국민행복카드) 발급
 - 전담금융기관은 이용권(국민행복카드) 신청발급 절차 후 발송
- 요양기관은 서비스 제공 후 대상자로부터 국민행복카드를 받아 결제 처리

나. 이용권(국민행복카드) 발급

1) 이용권(국민행복카드) 발급 절차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 접속 후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 신청 시 해당 카드사 지정 선택
 - 자격결정 후 해당 금융기관에서 지원신청서에 기재한 핸드폰(본인 또는 신청인 명의)으로 카드발급상담 후 발급
 -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은 반드시 임신부 본인 명의로 발급 신청
 - ※ 서비스 신청 시 국민행복카드사를 선택하면, 대상자 자격결정 후 전담금융기관으로 카드신청 정보 전송(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카드 신청 및 발급 불필요)
- 전담금융기관에서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서비스 대상자에게 개별 발송

2)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의 종류

- 카드의 종류 및 발급 원칙
 - 체크카드, 전용카드(계좌 미연계 체크카드)
 - 체크카드 발급을 기본으로 하고, 전용카드는 계좌계설이 어려워 체크카드 발급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자에게만 발급

- 카드는 서비스 대상자 명의로 발급
 -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및 임신부와의 관계서류 첨부
 - 금융기관의 카드발급 상담전화 시 임신부 본인과 반드시 통화하여 확인
- 체크카드 발급을 위해서는 서비스 대상자 본인 명의로 개설된 결제 계좌 필요
 - 체크카드는 국민행복카드 신청 카드사별로 상이

【 각 카드사별 개설 가능한 체크카드 계좌 】

카드사	개설 가능한 계좌
BC카드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NH농협, 스탠다드차타드, 수협은행, 제주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우체국, 하나은행
롯데카드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스탠다드차타드, 외환은행, 전북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 수협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삼성카드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새마을금고, 스탠다드차타드, 신한은행, 외환은행, 전북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경남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
KB국민카드	온라인 KB국민카드 및 KB국민은행 전국 영업점
신한카드	온라인 신한카드 및 신한은행 전국 영업점

※ 카드사와 개설 가능한 계좌은행은 국민행복카드와 동일하게 운영되므로 국민행복카드 변동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도 변동됨

- 계좌 개설이 필요한 경우 임신부 본인이 신분증(학생증, 청소년증, 주민등록증 등) 및 주민등록등본(실명확인용)을 지참하고 계좌 개설이 가능한 은행에 방문하여 직접 개설
- 다만, 만 14세 미만인 경우 보호자(부모 등) 신분증 및 가족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하고 부모가 카드사별 계좌 개설이 가능한 은행에 방문하여 개설(금융기관 방문 전에 전화로 필요서류 확인 요망)

3) 카드 결제기준

- 지원금 포인트는 이용권(국민행복카드) 발급 시 생성
 - ※ 카드 수령 시에는 포인트가 생성된 카드임
- 사용 기간 내 미 사용된 지원금(포인트)은 자동 소멸
-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를 결제하는 요양기관은 결제승인코드 '38' 입력

4) 카드 재발급

- 성명,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따른 카드 재발급은 전담금융기관에서 안내 및 신청
- 카드 훼손 또는 분실 시 전담금융기관에 신고 후 재발급
 - ※ 분실할 경우 재발급 시까지 이용할 수 없으므로 관리 철저 요망
 - ※ 분실 사실을 미신고하거나 신고지연으로 타인이 사용한 경우 나머지 차액만 지원되므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분실 시 즉시 신고할 것

5) 이용권(국민행복카드) 관련 주의사항

- 카드 수령 후 반드시 임산부 본인이 보관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 및 전담금융기관에서 자신의 지원금(포인트) 잔액 및 사용 내역 등 확인 가능

다. 이용권(국민행복카드) 지원내용

1) 이용권(국민행복카드) 지원액 및 지원방법

- 1회 임신에 120만원 범위 내 지원
- 임산부 및 2세미만 영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2) 사용기간

- 사용기간 : 분만예정일(유산진단일, 출산 이후 서비스 신청한 경우 출산일)이후 2년까지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사용기간 경과 후 자동 소멸
 - 지원된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은 카드 수령 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 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 + 2년까지 임신부 및 2세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지불에 사용
 - ※ 서비스 이용 도중 유·사산 시 3개월 이내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상담센터 1566-3232(단축4번)로 사용변경 신고(바우처는 유·사산일로부터 2년까지 사용 가능)
- 지원금 정지자는 지원금 정지일의 익일부터 카드 서비스가 정지

3) 이용권(국민행복카드) 부정사용 시

- 타인에게 ‘국민행복카드’를 양도하거나 매매 등으로 부정 사용이 확인될 경우 부당 이득 환수 및 서비스 대상자 자격 박탈
- 동일한 진료 항목의 동일한 금액에 대해 타 지원금과 중복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 만큼 환수 및 서비스 대상자 자격 박탈
 - 국가(지자체 포함) 또는 사회공헌기금 등으로부터 의료비를 지원 받은 경우 동일한 진료 항목의 동일한 금액에 대해서는 중복사용 불가
 - 다만, 동일 진료 항목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타지원금의 이용금액을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 부족분에 한하여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으로 이용가능
- 이용범위에 벗어난 진료 항목에 대한 청구(모자보건법 제14조를 벗어난 범위의 인공임신중절 등) 및 요양기관과 담합에 의한 부정 사용일 경우 해당 금액만큼 환수 조치
- 부정 사용을 확인한 경우 시군구(보건소)는 서비스 대상자 자격 박탈 조치 및 대상자나 기관에 부당 이득 환수예정통보서 발송 후 현금 고지 및 환수

4 서비스 실시

가. 서비스 이용절차

구 분	주 체	내 용
카드수령	임산부	● 본인서명 날인 후 카드 수령
서비스 제공	요양기관	● 임산부에게 임신·출산 관련 진료 제공 등
국민행복카드 사용	임산부	●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은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나. 서비스 이용범위

-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입원, 외래 진료 구분 없이 결제 가능
-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내 지원
 - * 임산부는 서비스 사용 전에 지원금 잔액 확인 가능(전자바우처 포털 확인 및 카드사 유선 확인)

5 예산 집행 및 정산

가. 개 요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이용권 사용금액에 대한 비용처리 및 정산 업무 담당
- 국가바우처 운영관리시스템을 통해 예탁금 집행 현황을 관리함으로써 예탁금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 고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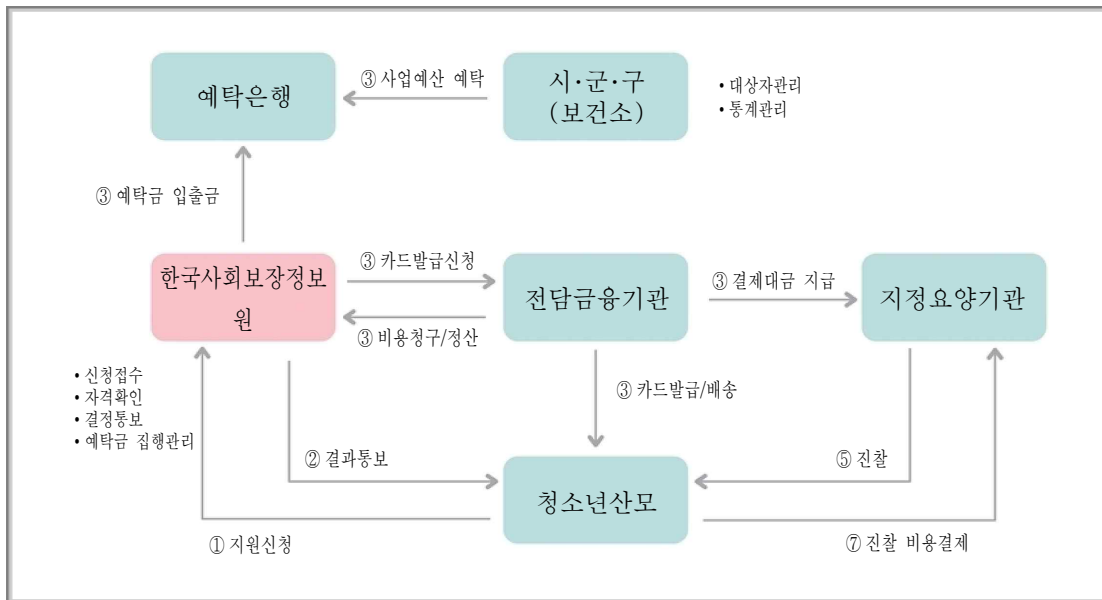
【 기관별 예산집행 관련사항 】

주 체	관 련 업 무
요양기관	● 카드 가맹점 계약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청구 및 수령
보건복지부 및 시군구(보건소)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 관리 (사업 예산 예탁업무 포함)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업무위탁·관리 감독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사후관리 등
전담금융기관	● 요양기관 이용권(국민행복카드) 가맹점 관리 ● 이용권(국민행복카드) 발행 및 거래내역 관리 ● 사업비 및 예탁금 정산
예탁은행	● 지정 예탁계좌 관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예탁금 비용처리 및 정산

나. 사업 예산

- 456백만원(국비+지방비, 지자체 보조 50%)

다. 추진 체계



라. 예산관리 및 비용정산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와 동일
- 보건복지부는 시·도의 사업실적을 감안하여 분기별 예산 배정, 시·도는 관할 시·군·구(보건소)의 사업실적 등을 감안하여 사업예산 배정
- 시·군·구(보건소)는 예산집행현황 및 지원실적을 매년초 시·도에 보고하고, 시·도는 익월 15일까지 보건복지부에 보고
- 이용권(국민행복카드) 이용자가 이사간 경우 서비스 이용 카드발급 시·군·구(보건소)에서 이용기간 만료 시까지 의료비 지원
 - 이용권(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주소 변경이 있는 경우 신청 당시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서 의료비 계속 지원

- 시·군·구(보건소)는 매분기(1, 4, 7, 10월 5일까지 선납) 첫월 5일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안내한 시·군·구(보건소)별 계좌에 입금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이용내역과 결제액을 비교·확인하여 예산 집행 및 운영 - 월정산 및 분기정산 내역은 국가바우처 운영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
- 정산절차

구 분	주 체	업무 내용
① 계좌개설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입금 및 지급계좌 개설 ※ 보건소 명의 전용 가상계좌 개설(타 사업 예산 입금 금지)
② 입금	시군구(보건소)	● 매분기 첫월(1,4,7,10) 5일까지 반드시 전용계좌에 선입금 ※ 입금 지연 시, 미수금 연체처리로 지역 내 대상자의 카드사용이 모두 중단되어 민원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입금일 필히 준수 요망
③ 청구	카드사	● 전월 카드이용내역을 당월 5일까지 정보원에 청구
④ 정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청구된 카드이용내역과 결제액을 시군구(보건소)별로 비교·확인하여 예산집행 및 운영
⑤ 내역확인	시군구(보건소)	● 국가바우처운영관리시스템을 통해 매월 지출된 의료비 확인

마. 비용의 예탁 및 정산

- 예탁금 수납계좌 및 지급계좌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예탁은행에서 지정하는 지점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용 자금관리를 위한 예탁금 계좌 개설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짝수년도와 홀수년도를 구분하여 효율적인 연말정산 및 관리를 위해 2개의 모계좌 개설
※ 모계좌 개설 및 변경 시 보건복지부 및 시·군·구(보건소)에 통보

● 비용 예탁

- 시·군·구(보건소)는 매분기 첫 월 5일까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정 계좌에 입금
 -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연1회 지정계좌를 안내하며, 전자바우처시스템 내 “예탁금관리>사업별예탁금 계좌조회”화면에서 시·군·구별 지정계좌 확인이 가능
 - * 사업비 예탁 시 예금주는 ‘지자체명 + 사업명’으로 부여 (예 : 서울종로구임신, 충북충주시임신, 제주제주시임신 등)
- 시·군·구청장은 사업비 예탁 후 전자바우처시스템 내 ‘예탁금관리>예탁금 현황조회’ 화면에서 정상 예탁 여부를 확인

● 예탁금의 정산 및 결산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예탁금 중에서 지급내역을 월 단위로 국가바우처 운영관리 시스템을 통해 정산관리
- 정산은 카드사에서 매입(결제 및 결제취소)으로 확정된 일자를 기준으로 함
 - ※ **예시** 국민행복카드 결제일은 '24.12.31.이나 카드사 매입이 '25.1.2. 발생한 경우 '25년 사업예산으로 카드사에 지급됨
 - ※ 전년도 국민행복카드 결제건이 금년도에 취소된 경우 취소금액은 금년도 해당월 정산금액에 반영됨
- 시·군·구(보건소)는 국가바우처 운영관리시스템을 통해 해당 시·군·구(보건소)의 예탁금 집행내역 확인 및 활용
 - ※ 전자바우처시스템의 “매출및정산>월별정산관리/ 연도별 정산관리” 화면에서 확인 가능

● 예탁금의 회계관리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와 동일
- 사업연도 종료 시 이용자별 보유 중인 바우처(지원금)를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

● 예탁금의 이자수입 관리 등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예탁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수입은 연말정산시 환급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각 시·군·구(보건소)별 예탁금 사용 잔액 및 이자수입이 발생할 경우, 해당 시·군·구(보건소)가 지정한 계좌로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환급 처리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예탁금 사용 잔액 및 이자수입 환급 시 10원 단위 미만은 절사 하되, 절사한 금액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수입으로 처리

6

비용의 지불 정산

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의 청구

- 요양기관은 서비스 제공 후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연계된 전담금융기관(카드사)에 청구
 - － 청구 방법 : 별도의 청구절차 없이 임신부의 임신·출산 진료비 범위 내에서 이용권 (국민행복카드)으로 단말기를 이용하여 결제
 - － 청구 시점 : 이용권(국민행복카드) 결제 시점
 - － 청구 대상
 - 본인부담금
 - 입원, 외래 진료행태 구분 없이 가능
 - 초음파, 양수검사 등 비급여 내역이나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의한 급여 내역 청구 가능

나. 청구 및 지급 절차

- ① 임신부 서비스 이용 ⇒ ② 국민행복카드 결제(기존 단말기 사용) ⇒ ③ 카드매출 전표 출력 ⇒ ④ 해당 카드사(BC/롯데/삼성/KB국민/신한 카드)로 송신 ⇒ ⑤요양기관에 비용 지급(매입 후 3~4영업일 이내)

다. 이용권 카드이용대금 지급시기 및 본인부담금 납부방법

구 분		내 용
지급 시기	요양기관 (가맹점)	- 요양기관(가맹점)과 전담금융기관(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간 가맹점 계약에 따라 카드전표 매입 후 3~4영업일 내 가맹점 수수료 공제 후 지급 ※ 가맹점 계약 시 체결내용에 따라 요양기관별로 지급시기 및 수수료율은 상이할 수 있음
납부 방법	임산부 (카드회원)	- 체크카드 : 가맹점에서 카드사용 승인 시 회원계좌에서 즉시 출금 - 전용카드 : 가맹점에서 카드사용 승인 시 별도 납부절차 없이 결제

라. 임신·출산 진료비용의 지급

- 결제시점의 자격 및 요양기관 점검
 - 전담 금융기관은 결제시점마다 대상자 자격 및 요양기관 확인 후 정상인 경우에만 결제
 - ※ 부정사용, 유산, 사망 등에 의하여 지원금 정지자로 확인된 자는 결제대상에서 제외
 - ※ 요양기관 휴·폐업, 탈퇴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한 기관은 결제대상에서 제외
- 전담금융기관과 요양기관 간에 기 체결된 가맹점 계약에 따라 기일이내 요양기관 계좌에 입금

마. 업무처리 절차

구 분	주 체	내 용
임신·출산 관련 의료서비스 이용	임산부	● 요양기관에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관련 의료 서비스 이용 - 입원, 외래 구분 없이 급여, 비급여 진료 가능
↓		
청 구	요양기관	● 국민행복카드로 이용 단말기 결제
↓		
지 급	전담금융기관 (카드사)	● 전담금융기관은 사망자 등 정보원에서 통보한 부적격자 여부 수시 확인 ● 요양기관에서 청구된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지급한 금액 청구
↓		
정 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전담금융기관에서 요양기관에 지급한 금액 지급
↓		
지급(이용)내역 확인	시·군·구	● 월별 임신·출산 의료비 지급(이용) 내역을 국가 바우처운영관리시스템으로 확인 및 관리

바. 이용내역 및 통계 관리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전담금융기관에서 통보한 지급(이용)내역 등을 총괄하여 통계 관리
 - － 매월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이용)에 대하여 정산 관리
- 보건복지부 및 시·군·구(보건소)는 국가바우처운영관리시스템 정산내역을 통계현황 등 보고 시 활용

7 개인정보 관리

가. 개 요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업무 수행과정에서 처리하는 자료, 정보, 민원 정보는 외부에 무단유출 시 개인의 재산과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으므로 업무용 이외에 불법이용 방지 및 사용정보가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 관리 철저

나. 개인정보 관리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처리하는 정보 등은 그 목적을 제외하고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시·군·구(보건소) 담당자 또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전담 금융기관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음
-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전담금융기관은 정보 등이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외부 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없음
-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임신부에게 지원금 확인 등 정보를 제공할 경우에 개인정보가 노출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제공
-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전담 금융기관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소속 직원 교육 및 점검 실시
- ‘임신헌인서’ 및 제출서류는 신청 접수일부터 3년간 보관 후 파기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Q&A)



Q 1.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대상은?

- ➡ 요양기관(산부인과 병·의원)에서 발급한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만 19세이하 산모입니다. 연령기준은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 입니다. 별도 소득기준은 없으나, 신청접수 시 자격상실자 (주민등록말소자, 국외 출국자 등)는 제외 됩니다.

※ (연령산정 예시) '05.2.10. 출생한 김산모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을 받기 위한 임신확인일은 언제까지인가요? <'25.2.9.>



Q 2. 신청방법 및 신청 접수처는?

- ➡ 구비서류(요양기관에서 받은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를 준비하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에서 신청한 후, 구비서류(임신 확인서, 주민등록등본)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동 구비서류 외 다른 확인서(진단서, 소견서, 산모수첩 등)로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서 작성 시 반드시 본인 명의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신출산 진료비 사업' 신청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신청정보와 주민등록 주소지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신청 및 구비서류 제출 절차 생략

< 「맘편한 임신」 통합제공 서비스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

일괄 신청		개별 신청(2종)
전국 공통 서비스 9종	자치단체 제공서비스	
시범 사업 ① 엽산제 지원 ② 철분제 지원 ③ 맘편한 KTX ④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임신축하용품(임신부 뱃지 등), 임신부 주차증, 산모교실, 임신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안내) 등	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② 위기임신(마더세이프) 전문상담
전국 확대 ⑤ 에너지바우처 ⑥ 표준모자보건수첩 ⑦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⑧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의료급여수급자) ⑨ <u>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u>		서비스 안내(3종) ①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②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③ 출산전후 휴가급여

**Q 3. 대리신청이 가능한가요?**

➡ 원칙적으로 임산부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고위험임신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본인이 등록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 신청도 가능

* 청소년산모가 본인 또는 가족 휴대폰 인증 문제 등으로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여 미혼모자시설, 권역별 미혼모·부자지원기관, 가까운 보건소에 신청할 경우 해당 기관에서는 본인 확인 후 제출 서류를 받아서 공문으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송부(이 경우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접수 등록하므로 해당 기관이나 청소년산모는 온라인 접수를 하지 않음)

**Q 4.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사용 가능 기간은?**

➡ 임산부 본인이 ‘국민행복카드’를 수령 받은 일자(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로부터 당초 구비서류로 제출했던 임신확인서에 기재된 분만예정일 +2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 가능기간이 지나면 지원금잔액은 자동적으로 소멸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Q 5. 임신·출산과 관련된 모든 진료에 사용할 수 있나요?**

➡ 지원액 120만원 범위 내에서 임산부 및 2세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6. 카드 신청 후 발급에서 수령까지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접수시점은 신청자가 우편으로 송부한 구비서류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받은 일자이며, 구비 서류가 모두 맞으면, 카드사에서 임산부가 기재한 연락처로 카드발급 상담전화를 합니다.

➡ 카드 상담을 거친 후 10일 이내에 임산부가 지정한 각 은행 영업점 방문 또는 인편으로 카드를 발송하면서 신청자 휴대폰번호로 안내 메시지를 발송합니다.

➡ 신분증(학생증, 청소년증, 주민등록증 등),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여 본인확인 과정을 거친 후 수령합니다. 단, 20일 이내에 수령하지 않으면 동 카드를 폐기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발송 안내 확인 후 20일 이내에 수령하여야 합니다.



Q 7. '임신헤인서'는 어디서 발급 받나요?

- ➡ '임신헤인서'는 병·의원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헤인서'상의 임신헤인일은 의료기관 의사로부터 임신헤인 받은 날을 의미합니다.
- ➡ 임신헤인서 양식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Q 8. 1일 또는 1회 사용금액에 제한이 있습니까?

- ➡ 사용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Q 9. 임신 횟수에 따라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혜택에 제한이 있나요?

- ➡ 임신 횟수에 따른 제한은 없으며, 1회 임신시마다 120만원 이내 지원됩니다.



Q 10. 유산·조산 이후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이 목적이므로 유산, 조산 전후 발생한 비용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임신 중 신청하는 경우 사용종료일이 분만예정일부터 2년까지, 출산(유산) 후 신청하는 경우 사용종료일은 출산(유산)일부터 2년까지입니다.

* 사용중지 신고전화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상담센터 1566-3232(단축4번)



Q 11.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과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 ➡ 국민건강보험(또는 의료급여)에 가입된 만 19세 이하 산모는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과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 ➡ 동시 이용자인 경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금이 먼저 차감되고 그 후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금이 차감됩니다.



12. 출산을 한 이후에도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출산(유·사산 포함)을 한 이후라도 지원기간(출산일 또는 유·사산일부터 2년까지) 이내라면 신청이 가능하며, 제출서류(출산 또는 유·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를 구비하여 온라인(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홈페이지)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여 보건소에 신청할 경우 해당 보건소에서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공문 신청 후 제출서류는 우편 송부

※ 출산 이후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을 신청한 경우, 임신확인일은 분만일로부터 10개월 전일로 인정



13. ‘국민행복카드’ 수령전이나 카드 미지참시, 사후 카드 결제를 할 수 있나요?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사용 가능일자는 카드수령일 기준 이므로 본인이 카드수령 전에 의료비를 납부하고 차후 소급해서 카드로 결제 할 수는 없습니다.

➡ 또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결제는 카드 미지참시에는 지원금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14. 카드 결제 후, 취소나 변경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카드 결제 후 취소는 카드단말기를 통하여 취소 승인거래를 하면 됩니다. 변경 시에도 먼저 취소 승인을 하고 정당한 카드결제를 하여야 합니다. 즉, 일반카드 처리절차와 동일하며, 부분취소는 안됩니다.



15. 카드를 훼손하거나 분실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대표전화로 전화 신고하거나 지점을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고 후 재발급 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 단, 분실 사실을 미신고하여 타인이 사용한 경우 나머지 차액만 입금하므로 분실 시에는 즉시 신고하기 바랍니다.



Q 16.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사용 가능액(잔액)을 확인할 수 있나요?

- ➡ 임신부 본인의 지원금 잔액 및 사용내역 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확인 및 카드사에 유선통화 후 파악할 수 있습니다.



Q 17. ‘국민행복카드’는 어떤 카드 인가요?

-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에 사용하는 ‘국민행복카드’는 사용자 본인 체크카드 또는 전용카드입니다. 카드 사용방법이 비정상(타인 사용 등)적일 경우 사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건소 요청으로 즉시 사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 ➡ 또한, 할부로 결제되지 않으며 국외지역 사용이 불가능한 국내전용 카드입니다. 카드결제 체크계좌는 본인 계좌이며, 사용자가 부담하는 카드연회비와 수수료는 없습니다.



Q 18. 보건소 담당자가 “국민행복카드”로 이용한 내역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 국가바우처 운영관리시스템에서 카드별로 카드승인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화면경로 : 전자바우처>매출및정산>금융카드지급내역조회



Q 19. 분만시 병실 이용료로 사용할 수 있나요?

- ➡ 의료기관에 입원한 병실 이용료로 사용 가능합니다. 병실 이용 기간이나 1인실 또는 다인실의 제한은 없습니다.



Q 20.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는 외국인에게 지원 가능한가요?

➡ 국민건강보험(또는 의료급여)에 가입된 외국인의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또는 의료급여) 가입 여부 확인을 위하여 추가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등) 필수 제출



Q 21. 영유아의 예방 접종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영유아의 경우 국가예방접종에 포함되지 않는 비급여 예방접종 시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⑬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작성요령

- ① : 성명(임산부)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합니다.
- ② :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③ : 본인명의 휴대전화가 있는 경우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또는 자택전화 중 하나를 반드시 기재 하여야 하며, 개인 연락처가 없는 경우 카드발급시 필요한 상담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보호자 또는 대리인의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합니다.
- ④ : 반드시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를 작성합니다.
- ⑤ ~ ⑩ : 요양기관에서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 ⑪ 반드시 신청인 본인의 이름을 기재한 후 본인이 서명을 하거나 인장을 찍어야 합니다.
 - 본인이 신청할 경우 반드시 본인의 성명, 서명 기재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반드시 대리인의 성명, 서명 기재
- ⑫ 대리인이 신청한 경우에만 기재
(작성 예시) 모, 부, 언니, 오빠 등
- 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내용 중에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의 동의함(○)에 표시해 주시고, '신청일자', '신청인 성명 및 서명'(대리인이 신청한 경우 대리인 포함)란 반드시 기재 요망
- ⑭ 우편송부처 :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 보건복지행정타운 17층,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산모 바우처 사업 담당자

[서식 제2호]

제V장

(앞 쪽)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변경신고서																																																
신청인 (임산부)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 - - -																																														
③전화번호	자택 :	휴대전화(☐ SKT ☐ LGU+ ☐ KT) :																																														
변 경 사 항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2" style="width: 20%;">확인 구분</th> <th colspan="3" style="width: 30%;">변경 전</th> <th colspan="3" style="width: 30%;">변경 후</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 style="width: 5%;">임신</td> <td style="width: 15%;">임신확인일</td> <td style="width: 10%;">년</td> <td style="width: 10%;">월</td> <td style="width: 10%;">일</td> <td style="width: 10%;">년</td> <td style="width: 10%;">월</td> <td style="width: 10%;">일</td> </tr> <tr> <td>분만예정일</td> <td>년</td> <td>월</td> <td>일</td> <td>년</td> <td>월</td> <td>일</td> </tr> <tr> <td>출산</td> <td>출산일</td> <td>년</td> <td>월</td> <td>일</td> <td>년</td> <td>월</td> <td>일</td> </tr> <tr> <td colspan="2">유산 또는 자궁 외 임신 진단일</td> <td>년</td> <td>월</td> <td>일</td> <td>년</td> <td>월</td> <td>일</td> </tr> </tbody> </table> 위에 기록한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함 년 월 일 요양기관명(기 호): () (직인) 담당의사(면허번호): ()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신청내용을 변경 신고합니다. 년 월 일 ⑩신청인(대리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⑪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 수진자(임산부)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족이 신청한 경우에 한합니다.) -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비고 : 1. 변경사항 신고 시 임신확인서를 요양기관에서 먼저 확인 받은 후 신청 가능합니다. 2. 성명 개명, 주민등록번호 정정 등 단순 인적사항만 변경된 경우는 동 지원 신청 변경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뒤쪽의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서를 계속 작성합니다.										확인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임신	임신확인일	년	월	일	년	월	일	분만예정일	년	월	일	년	월	일	출산	출산일	년	월	일	년	월	일	유산 또는 자궁 외 임신 진단일		년	월	일	년	월	일
확인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임신	임신확인일	년	월	일	년	월	일																																									
	분만예정일	년	월	일	년	월	일																																									
출산	출산일	년	월	일	년	월	일																																									
유산 또는 자궁 외 임신 진단일		년	월	일	년	월	일																																									

⑫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활용 안내

-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임신확인일, 분만예정일, 요양기관, 담당의사(면허번호), 국민행복카드 정보 (카드사, 유효기간 등 이력 포함), 서비스 이용내역
- 수집·이용 목적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제도 관련 본인 확인 및 자격 결정에 관한 업무
 -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의 생성 및 이용대금 정산 등에 관한 업무
 - 보육료 호환 결제를 위해 아이행복카드(보육통합정보시스템)와 연계 등 국가바우처 시스템 운영에 관한 업무
 - 허위·초과 결제, 대상자 자격위반 조사 등 이용권 적정급여 관리에 관한 업무
 - 기타 이용권 제도 운영에 필요한 통계 자료 생산 등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안내

- 국민행복카드 제작 및 발송관련 상담전화를 위해 해당 카드사에 성명, 연락처 제공
 - * 해당 카드사 상담전화 시 본인확인, 카드종류, 배송처 등 카드발급과 관련하여 별도 동의를 거침
- 온라인신청 시 본인인증을 위해 해당 통신사에 성명, 성별, 생년월일, 통신사, 휴대폰번호 제공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번호(민감정보 포함) 처리 근거 안내

-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 : 주민등록번호, 임신출산정보 (신청서에 적힌 정보)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제18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에 따라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신청에 따른 조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근거하여 해당 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안내

- 위 개인정보는 전자이용권 이용 자격 종료 후 5년 동안 보유 및 이용됩니다.
다만, 본 서식은 신청 접수일부터 2년간 보관 후 파기됨을 고지합니다.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

-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시 불이익 안내

- 위 내용은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에 해당하며 그 내용에 관하여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사항을 위의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보건복지부·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한국사회보장정보원 귀하

* 임신부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아래와 같이 추가적으로 필요함
 법정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연락처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작성요령

① : 성명(임산부)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합니다.

② :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③ : 본인명의 휴대전화가 있는 경우에 반드시 기재해야 됩니다.

휴대전화 또는 자택전화 중 하나를 반드시 기재 하여야 하며, 개인 연락처가 없는 경우 카드발급시 필요한 상담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보호자 또는 대리인의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합니다.

④ ~ ⑨ : 요양기관에서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⑩ 반드시 신청인 본인의 이름을 기재한 후 본인이 서명을 하거나 인장을 찍어야 합니다.

- 본인이 신청할 경우 반드시 본인의 성명, 서명 기재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반드시 대리인의 성명, 서명 기재

⑪ 대리인이 신청한 경우에만 기재

(작성 예시) 모, 부, 언니, 오빠 등

⑫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내용 중에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의 동의함(○)'에 표시해 주시고, '신청일자, 신청인 성명 및 서명(대리인이 신청한 경우 대리인 포함)'란 반드시 기재 요망

⑬ 우편송부처 :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 보건복지행정타운 17층,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산모 바우처 사업 담당자

청소년산모(임산부) 신청 매뉴얼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바우처 신청 및 이용절차

단 계	업무주체	내 용
임신확인	서비스신청자	요양기관에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발급
서비스 온라인 신청	서비스 신청자	-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에 접속하여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사업을 선택하여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신청 및 국민행복카드(체크카드 또는 전용 카드) 신청 - 구비서류(임신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는 우편 송부 - 우편접수처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청소년산모 바우처 업무 담당부서
서비스 자격결정	한국사회보장 정보원	신청내역 및 구비서류에 대해 접수 및 상담(전화) 후 자격 결정 및 카드신청 정보 송신
카드 발급	카드사	- 카드발급 상담(전화) 및 카드발급 ※ 카드가입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유선 상담
카드 수령	서비스 이용자	- 국민행복카드 확인 후 본인서명 ※ 카드가입신청서 별도 작성 본인 서명 필요
바우처 사용	서비스 이용자	- 요양기관에서 사용 － 사용범위 : 1회 임신으로 120만원 범위 내 ※ 카드 수령 후~분만예정일 + 2년까지 사용 가능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신출산 진료비 사업’ 신청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신청정보와 주민등록 주소지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신청 및 구비서류 제출 절차 생략



전자 바우처 포털 서비스 지원 신청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에 접속하여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 신청을 진행합니다.

1. 지원사업 확인

□ 초기 화면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사업” 이미지 또는, 사업별 소개 메뉴의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사업” 선택합니다.

- ①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사업”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사업별소개 서비스기관검색 제공기관 참여 및 평가 참여마당 신고센터 정보마당

나누는 사랑, 커지는 희망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사업

청소년산모에게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진료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상세 바로가기

문의안내
사회서비스 콜센터(유료)
1566-3232
(※ 선택 : 4번)
운영일시: 평일 09:00~18:00

단말기 문의
● LG 개통센터 1899-0656
● LG A/S센터 1577-8911
● SKA/S센터 1599-3813

POPUP ZONE
2021년 사회서비스품질평가
만족도조사
기간
11월22일~12월 3일

공자사항 FAQ Q&A

[기자권조제분유 / 여성청소년보건원생물품 / 에너지바우처 결제중단 안내] 2021.10.20

임신출산 원천징수 영수증발급 전자바우처 클린센터

② 또는, 사업별 소개의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사업” 메뉴를 선택합니다.

제V장

The screenshot shows the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Social Welfare Service E-portal) interface. The top navigation bar includes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사업별소개', '서비스기관검색', '제공기관 참여 및 평가', '참여마당', '신고센터', and '정보마당'. The main content area features a sidebar menu on the left with options like '나누는 사랑, 커지는 언어발달',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발달장애인지원사업', '임신출산진료비지원제도', '청소년산모임신출산의료비 지원사업', '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 '아이돌봄지원사업', '에너지바우처사업', and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사업'. The main content area displays a '문익안내' (Notice) section with a phone number '1566-3232' and a 'POPUP ZONE' section with a '공익신고' (Public Interest Report) button. A table at the bottom lists recent notices.

공지사항	FAQ	Q&A	+
[기저귀조제분유 / 여성청소년보건위생용품 / 에너지바우처 결제중단 안내]			2021.10.20
[가사·간병 방문지원 / 장애인 활동지원 본인부담금 임금중단 안내]			2021.10.20
[안내]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안내			2021.09.06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사업 소득세등 원천징수 중단 안내]			2021.08.27

③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 사업 소개 내용을 확인합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사업별소개

서비스기관검색

제공기관 참여 및 평가

참여마당

신고센터

정보마당

사업별소개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 발달장애인지원사업
- 임산출산전료비지원제도
- 청소년산모임신출산의료비 지원사업**
- 가치기/조제분유지원사업
- 아메돌봄지원사업
- 에너지바우처사업
-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사업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주요사업을 소개합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사업

청소년 산모에게 건강한 태아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사업목적

-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산모에게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함

지원대상

- '임신헌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 만 19세 까지 인정
- 소득·재산 기준 없음

지원범위

- 임신부의 임신·출산과 관련하여 모든 의료기관(약국 포함)에서 진료받은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용 중 본인 부담 비용
- **※임산부의 약제·치료재료 구입은 2020.7.1부터 적용**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유아가 모든 의료기관(약국포함)에서 진료받은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용 중 본인 부담 비용

지원금액

- 임신 1회 당 120만원 범위 내
- (유산 사산 및 출산 이후에도 신청가능)
- 사용기간 내 미사용된 지원금은 분만예정일 1년 이후 자동 소멸

사용기간

- 카드 수령 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사용방법

- 전국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신청방법

신청권자

- 청소년산모 본인
-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명의 핸드폰 미소유, 고위험 임신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이 대리 신청 가능
- 본인 또는 가족이 본인인증을 위한 휴대폰을 미소지한 경우에는 가까운 보건소에 문의

신청 접수처 : 온라인신청 (화면 하단의 '온라인신청' 클릭)

방문신청 (보건소, 미혼모자시설 등)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 신청 시, 청소년산모 의료비도 함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를 기 신청하셨거나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청소년산모 의료비를 개별 온라인 신청하셔야 하며, 신청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인 '임신출산 진료비사업'신청 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신청정보와 주민등록주소지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 신청 결과 생략

QUICK MENU

- 바우처서비스 이용현황
- 바우처서비스 이용내역
- 본인부담금 잔액조회
- 등급변경 이력조회
- 서비스하지 이력조회
- 본인부담금 환급내역

제 V 장

☐ 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서류 양식을 다운로드 합니다.

제출서류

- 청소년산모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illegible]

- 청소년산모의 가족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

- ① 청소년보호임신출산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 확인서 1부 (**화면 하단의 '임신확인서 다운로드'**)
- ② 임신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 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 ③ '위임장' 1부 (**화면 하단의 '위임장 다운로드'**)
- ④ 대리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 ⑤ 청소년산모와의 가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서류제출 우편송부처

-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 보건복지행정타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청소년산모 업무 담당자

· 신청 및 기타문의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 1566-3232 (4번 사회서비스 선택)
- 휴대폰인증 장애문의(KCB 고객센터) : 02-708-1000

2021년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파일저장)

이사회이사단 > 부가사단 > 이사단 >

오리사청
농림부

신체내 여환이
노후 건강

① 서비스 신청을 하는 경우

- 서비스 지원을 받기 위해 “임신헌인서”를 다운로드한 후 양식 마지막에 있는 “작성요령”을 참고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임신헌인란은 요양기관에서 발급을 받아야합니다.

청소년산도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신청 및 임신헌인서			
①성명 (임산부)	②주민등록번호	카드 구분 ☐ 비서카드 (은행) ☐ 롯데카드 ☐ 삼성카드	
③연락처 (가족)	(번호)		
영구 소			
※ 요양기관 확인란(임신헌인서)			
<임신·출산>			
구분	날 짜		
임신	④ 임신 확인일	년 월 일	※ 초음파로 자궁 내 임신날이 확인된 이후부터 기재 가능
출산	⑤ 분만 예정일	년 월 일	
출산 (출생)	출생일 (출생일)	년 월 일	
<유산>			
구분	날 짜		
유산 또는 자궁 외 임신 진단일	년 월 일	※ 중 또는 중 후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기재 가능 ① 임신초기(임신 12주 이내) 진단된 경우 중 혈청 β-HCG가 500mIU/mL 이상으로 측정된 적이 있는 경우 ② 초음파 또는 혈청 β-HCG로 임신이 확인된 후 임신 중절을 위한 수술(개복수술, 복강경수술, 소파수술 등)을 받거나, 자궁외임신(Miscarriage 등)을 한 경우 ※ 임종임신중절수술은 신청 대상 아님	
위에 기록한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함			
⑦ 요양기관명(기 호):		년 월 일	(직인)
⑧ 담당의사(면허번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청소년산도 임신·출산 의료비를 신청합니다.			
⑨신청인(대리인) 성명: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⑩신청인과의 관계:		년 월 일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용고		수수료 없음
신청인의 별지	☐ 유급증서 본인 ☐ 민법 제778조에 따른 가족		
신청인 제출서류	☐ 유급증서(임신부) 본인 신청서 제출서류 - "청소년산도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신청 및 임신헌인서"(이하 "임신헌인서"라 한다) - 유급증서(임신부)의 원본 및 사본을 일괄 할 수 있는 "유급증서본"		
결제 가능한 서비스 이용 기준	☐ 대리인 신청서 제출서류 - "청소년산도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신청 및 임신헌인서"(이하 "임신헌인서"라 한다) - 유급증서(임신부)의 원본 및 사본을 일괄 할 수 있는 "유급증서본"		
☐ 임신초기(임신 12주 이내) 진단된 경우 중 혈청 β-HCG가 500mIU/mL 이상으로 측정된 적이 있는 경우 ☐ 임신초기(임신 12주 이내) 진단된 후 임신 중절을 위한 수술(개복수술, 복강경수술, 소파수술 등)을 받거나, 자궁외임신(Miscarriage 등)을 한 경우 ☐ 임신초기(임신 12주 이내) 진단된 후 임신 중절을 위한 수술(개복수술, 복강경수술, 소파수술 등)을 받거나, 자궁외임신(Miscarriage 등)을 한 경우			
※ 위쪽의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서를 계속 작성합니다.			

⑪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활용 안내 ○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임신헌인서, 본인확인일, 요양기관, 담당의사(면허번호), 국민행복카드 정보 (카드사, 유효기간 등 이해 포함), 서비스 이용내역 ○ 수집·이용 목적 - 청소년산도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제도 본인 확인 및 자격 결정에 관한 업무 -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의 생성 및 이용내역 정보에 관한 업무 - 보육료 지원 결정에 위해 아이행복카드(보육통장정보시스템) 연계 업무 - 그 외 국가하위주체 운영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 - 학위·교과 및 결과, 대상자 자격확인 조사 등 이용권 결정업무 처리에 관한 업무 - 기타 이용권 제도 운영에 필요한 통계 자료 생산 등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안내 ○ 국민행복카드 제3자 제공 : 국민행복카드를 위해 해당 카드사에 성명, 연락처 제공 ○ 해당 카드사 : 상단정보 시 본인확인, 카드공부, 배송지 등 카드발급과 관련하여 별도 통의를 거침 ○ 온라인 신청 시 본인 인증을 위해 해당 통신사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통신사, 휴대전화번호 제공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 포함) 처리 근거 안내 ○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 : 주민등록번호, 임신출산정보 (신청서에 적힌 정보)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제18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에 따라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 제10조(신청에 따른 조사) 및 제13조(입장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근거하여 해당 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안내 ○ 위 개인정보는 전자이용권 이용 자격 종료 후 5년 동안 보유 및 이용됩니다. 다만, 본 서비스 신청 접수일로부터 1년간 보관 후 파기됨을 고지합니다.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동의 ○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시 불이익 안내 ○ 위 내용은 청소년 산도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에 해당하며 그 내용에 관하여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청소년 산도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행정정보의 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사항을 위해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청소년산도 임신·출산 의료비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보건복지부·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사회복지장려보원 귀하	
※ 임신부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아래와 같이 추가적으로 필요함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연락처:	

- ※ 요양기관기호, 면허번호 등 관련정보 반드시 기재,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에 동의 및 서명합니다.
- ※ 임신부가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신청서식 하단에 법정대리인 동의(서명)를 별도로 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 성명변경, 주민번호 정정 신청은 카드사에 별도 신청합니다.

② 임신확인일, 분만예정일을 변경신청 하는 경우

제V장

- 제출한 임신확인서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변경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양식 마지막에 있는 “작성요령”을 참고해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요양기관 확인란’은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아야합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변경신고서						
신청인 (임산부)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전화번호		가택 :		휴대전화(□ SKT □ LGU+ □ KT) :		
변경 사항						
확인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임신	임신확인일	년	월	일	년	월 일
	분만예정일	년	월	일	년	월 일
출산	출산일	년	월	일	년	월 일
유산 또는 자궁 외 임신 진단일		년	월	일	년	월 일
위에 기록한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함 년 월 일 요양기관명(기 호): () (직인) 담당자(면허번호): ()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신청내용을 변경 신고합니다. 년 월 일 ⑩신청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⑪신청인과의 관계: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귀부서류: 수간자(임산부)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족이 신청한 경우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비고: 1. 변경사항 신고 시 임신확인서를 요양기관에서 먼저 확인 받은 후 신청 가능합니다. 2. 성명 개명, 주민등록번호 정정 등 단순 인적사항만 변경될 경우는 등 지원 신청 변경 신고대상 아님입니다. ※ 뒤쪽의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서를 계속 작성합니다.						
⑪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활용 안내 ○ 항 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임신확인일, 분만예정일, 요양기관, 담당자(사/면허번호), 국민행복카드 정보(카드사, 유효기간 등 이력 포함), 서비스 이용내역 ○ 수집·이용 목적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제도 관련 본인 확인 및 자격 결정에 관한 업무 -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의 정상 및 이용제한 결산 등에 관한 업무 - 보육료 호환 결제를 위해 아이돌봄카드(보육통합정보시스템) 연계 업무 - 그 외 국가보유자 운영관리시스템 운영 및 연계에 관한 업무 - 위와·소과 결제, 대입과 자격확인 요구 등 이용권 결정금액 연계에 관한 업무 - 기타 이용권 제도 운영에 필요한 통계 자료 생산 등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안내 ○ 국민행복카드 제작 및 발송관련 상담전화로 위해 해당 카드사에 성명, 연락처 제공 * 해당 카드사 상담전화 시 본인확인, 카드주요, 배송지 등 카드발급과 관련하여 별도 통의를 거침 ○ 온라인 신청 시 본인 인증을 위해 해당 통신사에 성명, 생년월일, 성별, 통신사, 휴대전화번호 제공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번호(입감정보 포함) 처리 근거 안내 ○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임신출산정보 (신청서에 적힌 정보)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제25조 제1항, 제26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제28조 제1항, 제29조 제1항, 제30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3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5조 제1항, 제36조 제1항, 제3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39조 제1항, 제40조 제1항, 제41조 제1항, 제42조 제1항, 제43조 제1항, 제44조 제1항, 제45조 제1항, 제46조 제1항, 제47조 제1항, 제48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제51조 제1항, 제52조 제1항, 제53조 제1항, 제54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1항, 제57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제59조 제1항, 제60조 제1항, 제61조 제1항, 제62조 제1항, 제63조 제1항, 제64조 제1항, 제65조 제1항, 제66조 제1항, 제67조 제1항, 제68조 제1항, 제69조 제1항, 제70조 제1항, 제71조 제1항, 제72조 제1항, 제73조 제1항, 제74조 제1항, 제75조 제1항, 제76조 제1항, 제77조 제1항, 제78조 제1항, 제79조 제1항, 제80조 제1항, 제81조 제1항, 제82조 제1항, 제83조 제1항, 제84조 제1항, 제85조 제1항, 제86조 제1항, 제87조 제1항, 제88조 제1항, 제89조 제1항, 제90조 제1항, 제91조 제1항, 제92조 제1항, 제93조 제1항, 제94조 제1항, 제95조 제1항, 제96조 제1항, 제97조 제1항, 제98조 제1항, 제99조 제1항, 제100조 제1항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안내 ○ 위 개인정보는 전기이용권 이용 자격 종료 후 5년 동안 보유 및 이용됩니다. 다만, 본 서비스 신청 접수일로부터 1년간 보관 후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 ○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및 입감정보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시 불이익 안내 ○ 위 내용은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에 해당하며 그 내용에 관하여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행정정보의 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사항을 위해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보건복지부·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사회보장정보원 귀하 ※ 임신부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아래와 같이 추가적으로 필요함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연락처:						

- ※ 요양기관기호, 면허번호 등 관련정보 반드시 기재,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에 동의 및 서명합니다.
- ※ 임신부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신청서식 하단에 법정대리인 동의(서명)를 별도로 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 성명변경, 주민번호 정정 신청은 카드사에 별도 신청합니다.

③ 대리신청 하는 경우

- 대리 신청이 필요한 경우 **“위임장 다운로드”**를 하여 위임인 및 대리인 정보를 작성합니다.

※ 임신부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고위험 임신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위임장을 가지고 가족이 대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가족 대리 신청의 경우 반드시 **대리인 신분증 사본**과 위임인 간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서식 제3호)

위 임 장	
위임인(위임하는 사람) 성 명 : _____ 생년월일 : _____ 주 소 : _____ 전화번호 : _____	
대리인(위임받는 사람) 성 명 : _____ 생년월일 : _____ 주 소 : _____ 전화번호 : _____ 위임인(신청인)과의 관계 : _____	
위 위임인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서비스 신청에 관련한 모든 사항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 「주민등록법」 제37조제10호에 따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0 년 월 일	
위임인 : _____	(서명 또는 인)

제 V 장

□ 서비스 온라인 신청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 › 신청확인 › 지원신청 › 신청완료 단계로 신청을 합니다.

① “온라인신청” 버튼을 눌러 신청을 진행합니다.

- **사용기간**
 - 카드 수령 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 **사용방법**
 - 전국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 **신청방법**
 - **신청권자**
 - ① 청소년산모 본인
 -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명의 핸드폰 미소유, 고위험 임신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이 대리 신청 가능
 - 본인 또는 가족이 본인인증을 위한 휴대폰을 미소지한 경우에는 가까운 보건소에 문의
 - ② **신청 접수처** : 온라인신청 (화면 하단의 '온라인신청' 클릭)
 - 방문신청 (보건소, 미혼모자사설 등)
 -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 신청 시, 청소년산모 의료비도 함께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를 기 신청하셨거나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청소년산모 의료비를 개별 온라인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 **청소년산모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①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 확인서' 1부 (**화면 하단의 '임신확인서 다운로드'**)
 - ※ 요양기관에서 임신확인 받은 후 제출
 - ※ 청소년산모 대상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임신확인서' 뒷면 맨 하단에 있는 '법정대리인'란에 반드시 동의 서명 후 제출
 - ② 임신부의 연명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 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 ※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분만 인정되므로, 가능한 최근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제출
 - **청소년산모의 가족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
 - ①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 확인서' 1부 (**화면 하단의 '임신확인서 다운로드'**)
 - ② 임신부의 연명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 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 ③ '위임장' 1부 (**화면 하단의 '위임장 다운로드'**)
 - ④ 대리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 ⑤ 청소년산모와의 가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서류제출 우편송부처**
 -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 보건복지행정타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청소년산모 업무 담당자
 - **신청 및 기타문의**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 1566-3232 (4번 사회서비스 선택)
 - 휴대폰인증 장애문의 (KCB 고객센터) : 02-708-1000

② 개인정보 활용 동의 등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안내’ 및 ‘온라인신청 서비스 정책에 대한 안내’를 확인하여 동의한 후,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신청

[☙ > 청소년산모임신출산의료비 > 지원신청](#)

아래 개인정보 활용 및 온라인신청 서비스 정책에 대한 안내를 읽어보신후에 동의해 주세요.

STEP 01
개인정보활용 동의

STEP 02
신청확인

STEP 03
지원신청

STEP 04
신청완료

> 개인정보 활용 동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고지를 통하여 국민 여러분께서 입력하시는 소중한 개인정보의 용도와 활용 방식,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치내용을 사전에 안내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정보관리 안내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에서는 신청인의 동의하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신청을 위해서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필수적으로 수집합니다.

① 신청인정보 : 성명, 휴대폰번호(본인인증용), 수혜자와관계

② 수혜자정보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주민등록상 주소

③ 카드신청정보 : 카드발급구분, 카드사

*카드발급구분을 “기존 국민행복카드” 선택 시 카드사 정보는 불필요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온라인신청 서비스 정책에 대한 동의

1. 온라인신청 서비스는 방문신청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대체수단이며, 경우에 따라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스템 작업 및 타 기관과의 연계 상황으로 인해 온라인 신청서 작성 또는 제출이 용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이용자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에서 온라인신청 서비스 정책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온라인신청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확인

③ 신청 확인(본인 인증)

- 수혜자의 이름과 수혜자의 생년월일을 입력하여 확인 후, 신청자가 수혜자 본인인 경우, 본인의 휴대폰 번호로 인증을 수행합니다.

※ 임신부 본인이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고위험 임신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본인이 인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이 대리 신청 및 인증 가능합니다.

※ 수혜자는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서비스 지원대상자입니다.

수혜자 신청정보

표시는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수혜자명 *		
수혜자 생년월일 *		(예시:YYYY-MM-DD)
수혜자 임신확인일 *		(예시:YYYY-MM-DD) 확인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 받으실 분(수혜자)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입력해 주세요.

수혜자는 만 19세 이하 (임신확인일 기준) 청소년산모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과 입력하신 정보가 다른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신청인 휴대폰인증

휴대폰인증 확인

휴대폰 인증 요청

휴대폰인증은 신청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수혜자 본인명의 휴대폰이 없거나 고위험 임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혜자 핸드폰으로 인증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이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가족의 핸드폰으로 본인인증 하신 경우, 추가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 추가서류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 입증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이 대리신청 할 수 없을 경우(본인 또는 가족이 휴대폰인증을 할 수 없는 경우) 준비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보건소, 미혼모자사설, 미혼모부자지원기관을 방문하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 준비서류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청소년증, 학생증) 사본

전화상담안내

(서비스 신청관련 문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1566-3232 (4번 선택)

(휴대폰인증 장애 문의) KCB 고객센터 02-708-1000

(카드발급 문의) · BC카드 1899-4651 · 롯데카드 1899-4282 · 삼성카드 1566-3336 · 신한카드(1544-8868)

· KB국민카드(1599-7900)

임신확인서다운로드 >

위임장다운로드 >

49 ●

④ 신청정보 입력(지원신청)

- 수혜자의 휴대폰번호, 주민등록상 주소, 수혜자와 신청자의 관계, 수혜자의 카드발급 구분, 카드사를 입력합니다.

※ 전담금융기관의 카드발급 상담전화를 위해 전화번호 기재 필수(휴대전화 기재 필수)입니다.

※ 카드발급은 신규 또는 기존 국민행복카드로 신청이 가능하며, 기존 카드일 경우에는 기존에 발급된 카드사에서 카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신청정보를 확인하고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STEP 01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

STEP 02

신청확인

STEP 03

지원신청

STEP 04

신청완료

지원신청

*표시는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수혜자 정보	이름			생년월일	
	김전화	선택	-	휴대전화 *	010 - -
	주민등록상 주소 *	우편번호 검색			
신청자 정보	이름			휴대전화	
	수혜자와의 관계 *	본인			
카드 정보	발급구분 *	☒ 신규발급 신청 ☐ 기존 국민행복카드 사용			
	카드사 선택 *	선택	*신규발급을 희망하는 카드사를 선택해 주시면, 해당 카드사에서 수혜자 핸드폰으로 카드발급 안내전화를 드립니다.		

전화상담안내

- (서비스 신청관련 문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1566-3232 (4번 선택)
- (휴대폰인증 장애 문의) KCB 고객센터 02-708-1000
- (카드발급 문의) · BC카드 1899-4651 · 롯데카드 1899-4282 · 삼성카드 1566-3336 · 신한카드 (1544-8868)
- KB국민카드 (1599-7900)

임산확인서 다운로드 >

위임장 다운로드 >

신청

다시작성

⑤ 신청 완료

제V장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하고 임신확인서 등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기한까지 우편 송부합니다.

STEP 01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

STEP 02

신청확인

STEP 03

지원신청

STEP 04

신청완료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신청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해 주시면

접수가 완료 됩니다.

신청서류 제출기한 :

제출서류 안내

본인 신청시 제출서류	①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원본) 1부 ② 주민등록등본(원본) 1부 * 주민등록등본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만 인정(주민등록번호 표시 필수)
대리 신청시 추가제출서류	①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원본) 1부 ② 주민등록등본(원본) 1부 * 주민등록등본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만 인정(주민등록번호 표시 필수) ③ 위임장 원본 (하단 '위임장 다운로드' 후, 사용) ④ 대리인 신분증 사본 ⑤ 가족관계 확인 가능 서류 원본(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접수완료 처리되며, 접수처리 이전까지 신청정보 수정가능
(접수가 완료된 이후에는 신청정보 수정불가)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는 자격승인 후, 국민행복카드 발급일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우편제출주소

○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 보건복지행정타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청소년산모 업무 담당자
* 우편배송 중 분실 또는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해 등기발송을 권장합니다.

국민행복카드(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이용권 부정사용시 환수 및 자격박탈

○ 타인에게 '국민행복카드'를 양도하거나 매매 등으로 부정사용이 확인 될 경우 부당 이득 환수 및 서비스 대상자 자격 박탈
○ 이용범위에 벗어난 진료항목에 대한 청구(불법 인공임신중절 등) 및 요양기관과 당합에 의한 부정사용일 경우 해당 금액만큼 환수 조치

문의처

- (서비스신청관련 문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1566-3232(4번 선택)
- (카드발급 문의) BC카드 1899-4651 롯데카드 1899-4282 삼성카드 1566-3336 신한카드(1544-8868) KB국민카드(1599-7900)

임신확인서다운로드 >

위임장다운로드 >

※ 온라인신청 이후 절차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구비서류 접수 확인 후 대상자 자격 결정
- 금융기관(카드사) : 카드발급관련 상담 및 안내
- 서비스 이용자 : 카드수령 후 서비스 이용

4. 서비스 신청내역 변경

□ 서비스 신청내역을 ‘변경’ 또는 ‘재신청’하는 경우 신청내역확인 > 본인인증 > 변경정보 입력 > 신청완료 단계로 진행합니다.

① “신청내역확인” 버튼을 눌러 서비스 신청 내역 변경을 진행합니다.

제출서류

청소년산모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①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 확인서’ 1부 (화면 하단의 ‘임신확인서 다운로드’)

※ 요양기관에서 임신확인 받은 후 제출

※ 청소년산모 대상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임신확인서’ 뒷면 맨 하단에 있는 “법정대리인”란에 반드시 동의 서명 후 제출

② 임신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 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본만 인정되므로, 가능한 최근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제출

청소년산모의 가족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

①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 확인서’ 1부 (화면 하단의 ‘임신확인서 다운로드’)

② 임신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 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③ ‘위임장’ 1부 (화면 하단의 ‘위임장 다운로드’)

④ 대리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⑤ 청소년산모와의 가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제출 우편송부처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 보건복지행정타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청소년산모 업무 담당자

신청 및 기타문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 1566-3232 (4번 사회서비스 선택)

휴대폰인증 장애문의 (KCB 고객센터) : 02-708-1000

2021년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파일저장)

임신확인서다운로드 >

변경양식다운로드 >

위임장다운로드 >

온라인신청

신청내역확인

※ 개인정보 활용 동의 없이 신청확인(본인인증)화면으로 이동 합니다.

② 신청 내역 확인을 위한 휴대폰 인증

- 수혜자의 이름과 수혜자의 생년월일, 임신확인일을 입력하여 확인 후, 신청자가 수혜자 본인인 경우, 본인의 휴대폰 번호로 인증을 수행합니다.

※ 임신부 본인이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고위험 임신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본인이 인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이 대리 신청 및 인증 가능합니다.

※ 수혜자는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서비스 지원대상자입니다.

수혜자 신청정보

수혜자명 *

수혜자 생년월일 *

수혜자 임신확인일 *

(예시:YYYY-MM-DD)

(예시:YYYY-MM-DD)

확인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 받으실 분(수혜자)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입력해 주세요.

! 수혜자는 만 19세 이하(임신확인일 기준) 청소년산모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과 입력하신 정보가 다른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신청인 휴대폰인증

휴대폰인증 확인

휴대폰 인증 요청

! 휴대폰인증은 신청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 수혜자 본인명의 휴대폰이 없거나 고위험 임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혜자 핸드폰으로 인증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이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 가족의 핸드폰으로 본인인증 하신 경우, 추가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 추가서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 입증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가족이 대리신청 할 수 없을 경우(본인 또는 가족이 휴대폰인증을 할 수 없는 경우)준비서류를 자참하여 가까운 보건소, 미혼모자사설, 미혼모부자지원기관을 방문하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 준비서류: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청소년증, 학생증) 사본

전화상담안내

• (서비스 신청관련 문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1566-3232 (4번 선택)

• (휴대폰인증 장애 문의) KCB 고객센터 02-708-1000

• (카드발급 문의) · BC카드 1899-4651 · 롯데카드 1899-4282 · 삼성카드 1566-3336 · 신한카드 (1544-8868) · KB국민카드 (1599-7900)

임신확인서다운로드 >

위임장다운로드 >

웹 페이지의 메시지

수혜자 또는 대리 신청인의 휴대폰인증을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 해주십시오.(하단 '휴대폰인증요청' 버튼을 클릭)

확인

③ 신청정보 입력 수정완료

- 처리상태가 “신청완료” 임을 확인 후 변경할 정보를 입력합니다.
 - ※ 처리상태가 접수, 승인, 거절인 경우 수정 및 신청취소는 처리 불가 합니다.
 - ※ 전담금융기관의 카드발급 상담전화를 위해 전화번호 기재 필수(휴대전화 기재 필수) 입니다.
 - ※ 카드발급은 신규 또는 기존 국민행복카드로 신청이 가능하며, 기존 카드일 경우에는 기존에 발급된 카드사에서 카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신청정보를 확인하고 “수정” 버튼을 눌러 완료합니다.

신청정보

*표시는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신청정보	신청일자	2016년 10월 26일	신청접수번호	SS00000000010042
처리정보	처리상태	신청완료		
수혜자	이름		생년월일	1999년 01월 01일
	집전화	선택 - -	휴대전화	010 - -
	주민등록상 주소 *	우편번호 검색		
신청자	이름		휴대전화	010 - 6366 - 7355
	수혜자와의 관계 *	본인		
카드정보	발급구분 *	☐ 신규발급신청 ☒ 기존 국민행복카드로 신청		
	카드사 선택 *	*기존 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사용중인 국민행복카드사를 선택해 주시면, 해당 카드로 포인트를 지원해 드립니다.		

전화상담안내

- (서비스 신청관련 문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1566-3232 (4번 선택)
 - (휴대폰인증 장애 문의) KCB 고객센터 02-708-1000
 - (카드발급 문의) - BC카드 1899-4651 - 롯데카드 1899-4282 - 삼성카드 1566-3336 - 신한카드(1544-8868)
 - KB국민카드(1599-7900)

임신확인서 다운로드 >

위임장 다운로드 >

수정 신청취소

※ 수정시 알림창

※ 신청취소시 알림창

웹 페이지의 메시지

신청내역이 수정되었습니다.

확인

웹 페이지의 메시지

신청내역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확인 취소

서비스 이용자 포탈 이용 매뉴얼



전자 바우처 포털 서비스 내역 확인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 접속하여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서비스 내역을 확인합니다.

1. 회원가입

□ 서비스 내역 확인을 위해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① 회원가입

- 초기 화면에서 “회원가입”을 선택합니다.



② 서비스 이용자 선택

- 회원가입 유형에서 서비스 이용자를 선택합니다.

※ 바우처 서비스 자격이 있는 대상자에 한해 회원가입 가능

The screenshot shows the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Social Service Electronic Voucher) website. The top navigation bar includes links for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사업별소개', '서비스기관검색', '제공기관 참여 및 평가', '참여마당', '신고센터', and '정보마당'. The main content area is titled '회원가입' (Sign Up) and includes a sub-header '아래의 회원가입 유형을 선택해주세요.' (Please select the sign-up type below). There are three main sign-up options: '서비스 이용자' (Service User), '국내 외국인 회원' (Domestic Foreign Member), and '서비스 제공인력' (Service Provider). The '서비스 이용자' option is highlighted with a red box and includes sub-options for '14세미만' (Under 14) and '14세이상' (14 and over). The '국내 외국인 회원' option includes a sub-option for '한국에 계신 외국인' (Foreigners living in Korea). The '서비스 제공인력' option includes a sub-option for '가맹하기' (Join). A sidebar on the left contains '회원정보' (Member Info) and '회원가입' (Sign Up) links. A sidebar on the right contains a 'QUICK MENU' with links to '바우처서비스 이용현황' (Voucher Service Usage Status), '바우처서비스 이용내역' (Voucher Service Usage History), '본인부담금 전액조회' (Full Self-Burden Amount Inquiry), and '등금변경 이력조회' (Deposit Change History Inquiry).

③ 약관 동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를 확인하고 “동의함”을 체크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신청

☞ > 청소년산모임신출산의료비 > 지원신청

아래 개인정보 활용 및 온라인신청 서비스 정책에 대한 안내를 읽어보신후에 동의해 주세요.

STEP 01
개인정보활용 동의

STEP 02
신청확인

STEP 03
지원신청

STEP 04
신청완료

> 개인정보 활용 동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고지를 통하여 국민 여러분께서 입력하시는 소중한 개인정보의 용도와 활용 방식,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치내용을 사전에 안내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정보관리 안내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에서는 신청인의 동의하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신청을 위해서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필수적으로 수집합니다.

① 신청인정보 : 성명, 휴대폰번호(본인인증용), 수혜자요관계
 ② 수혜자정보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주민등록상 주소
 ③ 카드신청정보 : 카드발급구분, 카드사
 *카드발급구분을 “기존 국민행복카드” 선택 시 카드사 정보는 불필요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온라인신청 서비스 정책에 대한 동의

1. 온라인신청 서비스는 방문신청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대체수단이며, 경우에 따라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스템 작업 및 타 기관과의 연계 상황으로 인해 온라인 신청서 작성 또는 제출이 용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이용자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에서 온라인신청 서비스 정책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온라인신청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확인

④ 본인확인

-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확인”을 누릅니다.

⑤ 기본정보입력

- 아이디와 비밀번호, 이메일주소, 휴대폰, 전화번호, 관심정보를 입력 후 “회원가입” 버튼을 누릅니다.

⑥ 회원가입 완료

- 회원가입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후 ‘로그인 바로가기’ 버튼을 눌러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회원가입

회원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STEP 01 약관동의 > STEP 02 본인확인 > STEP 03 기본정보입력 > STEP 04 가입완료

회원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전심으로 환영합니다.
회원님이 정보는 로그인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우처 관련 다양한 서비스는 마이페이지에서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로그인 바로가기

⑦ 로그인

-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로그인” 버튼을 누릅니다.



로그인

로그인하시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의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로그인 아이핀(PIN)인증

웹회원 로그인

아이디

패스워드

로그인

2. 바우처서비스 이용현황 조회

□ 신청한 바우처서비스를 확인하기 위해 ‘바우처서비스 이용현황’을 선택합니다.

① 마이페이지 > 바우처서비스 이용현황

- 회원가입한 아이디로 로그인한 뒤, “마이페이지”에서 “바우처서비스 이용 현황”을 선택합니다.



② 바우처서비스 이용현황 조회

- 바우처카드(국민행복카드) 정보와 바우처 잔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서비스이용현황

> 마이페이지 > 바우처서비스이용현황

회원님의 바우처카드 정보와 서비스 이용현황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님께서 현재 총 1건 의 바우처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십니다.

본인부담금 납부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	------

바우처 카드

카드번호	-	카드번호	-
------	---	------	---

국민행복카드

카드번호	LT00-****-****-0015	카드사	롯데카드
사업유형	임신출산전료비지원, 청소년산모임신출산의료비지원		

국민행복카드의 이용정보는 실시간으로 수신되지 않아 바우처 실잔량과 상이할 수 있으니 정확한 바우처잔량 확인은 해당 카드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상카드 휴대폰번호

사업구분	없음	통신사	없음
이름	없음	휴대폰번호	없음

가상카드 인증번호

회원님이 가상카드 인증번호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인증번호 조회

신청정보

서비스 유형 : 임신출산지원

국민행복카드

- 바우처 총보유 **1,700,000 P**
- 청소년산모임신출산의료비지원 바우처 총사용 **-70,000 P**
- 임신출산전료비지원 바우처 총사용 **-140,000 P**
- 바우처 잔량 **1,490,000 P**

* 바우처 총보유/잔량은 임신출산전료비와 청소년산모임신출산의료비가 합산된 포인트입니다.

사용내역조회

3. 서비스 이용내역 조회

□ 바우처서비스 이용내역을 조회하기 위해 ‘서비스 이용내역’을 선택합니다.

① 마이페이지 > 서비스이용내역

- 회원가입한 아이디로 로그인한 뒤, “마이페이지”에서 “서비스 이용내역”을 선택합니다.



② 서비스 이용내역 조회

- 결제유형, 결제구분, 승인일자, 사업구분을 선택한 뒤, “조회” 버튼을 누르면 서비스별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사업의 이용내역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카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이용내역

홈 > 마이페이지 > 서비스이용내역

회원님의 서비스 이용내역을 검색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제유형 전체 ▼

결제구분 전체 ▼

승인일자 2015-05-01 ~ 2015-06-01

사업구분 전체 ▼

조회 엑셀다운로드

결제일시	서비스이용일자		사업구분	서비스유형	승인금액	결제유형	결제구분	반납일자
	시작시간	종료시간						
2015.05.26 10:45:56	2015.05.26		임신출산지원	임신출산진료 비지원	60,000	단말기	정상결제	
2015.05.26 10:45:56	2015.05.26		임신출산지원	임신출산진료 비지원	80,000	단말기	정상결제	
2015.05.18 16:20:20	2015.05.18		임신출산지원	청소년산모임 신출산의료비 지원	70,000	단말기	정상결제	

! 이용내역의 조회는 1개월 단위입니다.

! 임신출산진료비지원과 청소년산모임신출산의료비지원 이용내역은 실시간으로 수신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이용내역은 해당 카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